##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 차입한도액
합 계	649,182,091	19,475,463
일반회계	556,548,637	16,696,459
특별회계	92,633,454	2,779,004
공기업특별회계	28,556,110	856,68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523,640	555,70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032,470	300,974
기타특별회계	64,077,344	1,922,3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558,516	76,75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370,258	71,108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280,000	8,40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276,217	38,287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3,320,415	99,61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25,465	6,764
도시개발특별회계	8,183,902	245,51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73,100	11,193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28,875,273	866,258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8,984,469	269,53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776,316	83,289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	4,853,413	145,602

- 제 2 조 세입ㆍ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 제 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664,104천원으로 한다.
-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2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제 7 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특별교부금(세),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성립전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